

규 칙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지방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장영준

2022년 12월 22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59호

붙임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순천시의회**”를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천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순천시의회 소속**”을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u>순천시의회</u>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신 설>	제3조 (허가권자) ① -----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순천시의회</u>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u>순천시의회</u> 공무국외출장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 ----- ---- 위해 ----- -----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
며 위원은 순천시의회 -----
-----.

⑤ ~ ⑦ (현행과 같음)